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숭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48

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최승재·이철규·정진석

이종배 · 김희국 · 김예지

이주환 · 서일준 · 김태흠

김성원 • 윤주경 • 전주혜

홍준표 • 황보승희 • 엄태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장의 소재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가 빠져 있어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정보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3조). 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신고한"을 "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"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"소재지"를 "소재지 및 업종"으로 하고, 같은 항제2호 중 "사업장에 관한 정보"를 "사업장에 관한 정보, 사업장의 종사자 수"로 한다.

가. 상호, 등록번호 및 매출액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	제13조(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
및 운영) ① (생 략)	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	2
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	
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	
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	
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	
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	
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	
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	
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	1
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「부가	
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 및 제	
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	
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<u>신고한</u>	<u>신고</u>
다음 각 목의 정보: 국세청장	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
	<u> 부여받은</u>
<u>가. 상호</u>	가. 상호, 등록번호 및 매출
	<u>액</u>
나. 사업장의 <u>소재지</u>	나 <u>소재지 및 업</u>
	<u>중</u>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
2. 그 밖에 지역별 인가·허가	2

사업장에 관한 정보, 지역별 ---사업장에 관한 정보, 사업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축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 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료 또는 정보: 해당 자 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 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, 그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

기업무	<u> </u>
의 구	
민정하	
정보	
는 자	
豆 또	
정기관	
관계	
밖에	
	_
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③ • ④ (생 략)